

농업분야 신생 협동조합의 현황과 유형별 특징*

최경식^a · 남기포^a · 황대용^{b,**}

^a농촌대학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81)

^b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운영현황과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하여 195개의 협동조합을 설문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서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지만, 생산자 협동조합 비율이 매우 높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조합규모가 30명 내외 규모가 많고 1인당 출자금은 모든 협동조합 유형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업을 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업방식은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안정적인 계약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며 조합원의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한다. 조합규모는 30명 이상의 규모가 많지만 1인당 출자금 액수는 낮은편이다. 유통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며 판매방식은 인적 네트워크와 고정점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10명이하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며 1인당 출자금 또한 가장 적다. 운영 및 사업내용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협

* 본 연구는 2014-2015년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과제번호: PJ009214)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황대용) 전화: 063-238-1192; email: hdy@korea.kr
560-5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동조합의 유형별 사업모델에 따라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과정에서의 지원정책보다는 사업개발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또한 농협과 연계한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농업분야 협동조합, 조직운영, 사업운영

1. 서론

지금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의 설립 붐이 일고 있으며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후 18개월이 지난 2014년 5월까지 4,82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¹⁾ 이는 하루에 8~9개, 한 달에 267개꼴로 설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까지 8,289~10,73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이라는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철선 외, 2012). 농림어업관련 협동조합도 601개로 하루 1개, 매월 3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으며 전체 협동조합의 12.5%에 이르고 있다.

협동조합의 열풍에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기존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 담당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와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설광언 외, 2012).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증대로 인해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 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관련 연구들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의의와 정책방향 그리고 각

1)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합한 것이다.

분야별 육성방안에만 치우쳐 있다.²⁾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는 5인 이상만 모이면 자유롭게 법인격을 가진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규창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본질과 가치를 재인식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두년, 2012; 박범용, 2012). 이러한 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신생 협동조합들이 자생적인 역량을 가지고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접근성 향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교육과 정보제공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설광언 외, 2012; 원종욱, 2012; 오은주, 2012). 협동조합 실태에 관한 연구로는 서울시 53개 일반협동조합에 실태조사(희망제작소, 2013)와 2013년 5월 기준으로 인가된 전국 1,209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다(기획재정부, 2013). 이들 조사를 통해 나타난 협동조합들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협동조합 규모가 영세한 것과 동시에 전문성이 약한 것. 둘째, 외부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 셋째, 협동조합은 대부분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증대나 사업추진 실적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협동조합 사업이 본격적으로 안정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업모델의 정립과 충분한 타당성 검증 없이 정부지원만을 기대하고 경쟁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³⁾

2) 각 분야별 정책과제연구로는 여성일자리(오은진 외, 2012), 농업농촌(김정섭 외, 2012; 최양부; 김기태, 2012a), 문화예술(허은영, 2012), 화물운송(정승주 외, 2013), 지역사회통합(채종현, 2013), 중소기업(한창용, 2014) 등이 있다.

3) 이는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관련 홈페이지(<http://www.coop.go.kr/>)와 실태조사결과(기획재정부, 2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협동조합 기본정보에서 연락

농업분야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 또한 공존하지만 다른 분야와는 달리 기존 개별법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김종선 외, 2013). 농업·농촌분야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로서 첫째는 협동조합 사업 분야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설립요건이 완화되어 인적 및 재정적 설립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농촌지역에 법인격을 갖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법인격을 유지한 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경영체 및 사회조직들이 비로소 적합한 법인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⁴⁾(김정섭 외, 2012). 농업·농촌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사업분야는 ①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과 관련한 협동조합 ②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협동조합 ③농촌의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등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농협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경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합관계

처를 공개한 협동조합은 30%에 불과하며 정부기관의 실태조사에서도 연락되지 않은 협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도 사업을 운영하지 못한 협동조합이 45.6%에 이르고 있으며 40시간 상근 직원이 없는 협동조합도 53.2%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설립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 매월 설립되는 협동조합 개수는 2014년 2월 332개, 3월 315개, 4월 274개, 5월 237개, 6월 239개, 7월 226개, 8월 185개, 9월 150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 4) 사회적기업, 공동체회사, 마을기업, 자활조직 등 공익이나 공동체의 목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들 조직들에게 법인체를 의무화하거나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전까지는 주식회사나 영농조합의 법인격을 활용하고 있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이나 이제는 조직목적에 적합한 법인격을 갖게 되었다. 김정섭 외, (2012, p.41)의 조사에서 공동체회사 및 마을기업의 53.8%가 기존 사업조직을 협동조합으로 전환(45.5%)하거나 새로운 사업조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15.3%)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농협과 동일한 수준의 사업역량, 농업정책 지원대상자격 획득, 농협의 신용사업부분의 교차보조 수익을 넘는 수익 창출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중단기적으로 경합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농업 전체적인 측면과 협동조합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특히 생산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동조합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설치된 농업법인의 난립과 농협과 연계미흡이라는 문제점을 다시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협이 신생 협동조합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초기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경험과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법인들에 대한 판매채널 제공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김기태, 2012a, 2012b; 김종선 외, 2013). 이에 대해 기존 농협과 경합이나 보완이나 하는 논쟁은 지나치게 농협을 의식하고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가능성과 희망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최양부, 2012).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협동조합과 실질적인 경합관계에 있는 조직은 생산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경쟁을 위해서 농지소유 및 임차, 조세감면, 정책대상에서 최소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김정섭 외, 2012; 김정섭 외, 2013).

이러한 신생 협동조합들은 영농조합법인과 대등한 지원을 확보하고 기존 지역농협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지역농협의 역할을 보완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조합원의 신뢰확보와 자구적인 노력으로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정착, 협동

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역공동체사업과 연계한 인큐베이팅, 홍보지원 등의 지자체의 역할, 생산, 유통, 마을사업부문에서 기존협동조합 조직과의 협력모델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김중선 외, 2013).

농업·농촌분야에서 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는 농림어업의 산업 비중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활발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⁵⁾ 그 이유로는 협동조합 조직 형태가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농업분에서는 친숙하고 농촌지역의 사회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새로운 기대가 증대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농업·농촌부문 신생 협동조합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적인 과제도출에 집중되어 있다. 제시되고 있는 정책과제들은 협동조합들이 자율적인 조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틀 안에서 직접지원 보다는 간접적인 교육 및 훈련지원, 기존농협과 연계 등에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한 실태분석과 구체적인 사례조사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협동조합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사례조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⁶⁾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유형별 조직 및 사업특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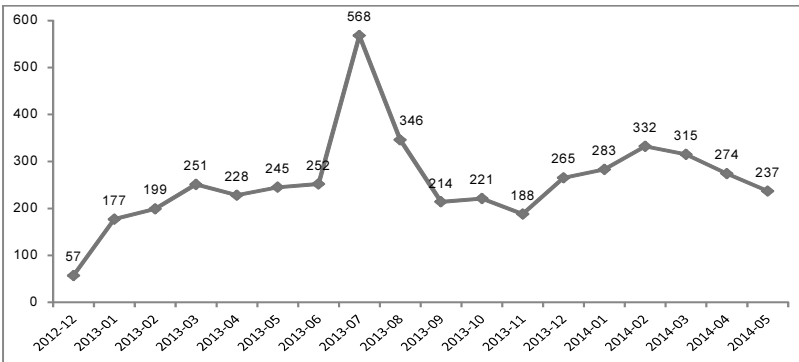
5) 2014년 5월말까지 설립된 협동조합 중에서 농림어업부문의 구성비는 12.5%이다. 이를 2013년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의 구성비 2.3%와 경제활동인구에서 농림어업 취업자 구성비 6.1%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6)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조사로는 김중선 외(2013)가 있다. 조사 협동조합은 각 지자체로부터 소개받은 20개 협동조합으로 대부분 운영이 안정적이거나 규모가 큰 협동조합으로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2. 협동조합 설립현황

2.1. 전체 협동조합 설립현황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은 2014년 5월 기준으로 4,822개이며 월평균 약 267개씩 신설되었다. 일반 협동조합⁷⁾의 경우, 전체 협동조합의 96.5%인 4,652개이며 2012년 12월에 설립개수가 57개로 가장 적었고 2013년 7월에 568개로 가장 많이 설립되었다. 2013년 7월 이후에는 3개월 동안 설립개수가 급감하다가 2014년 2월까지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나 이후 다시 설립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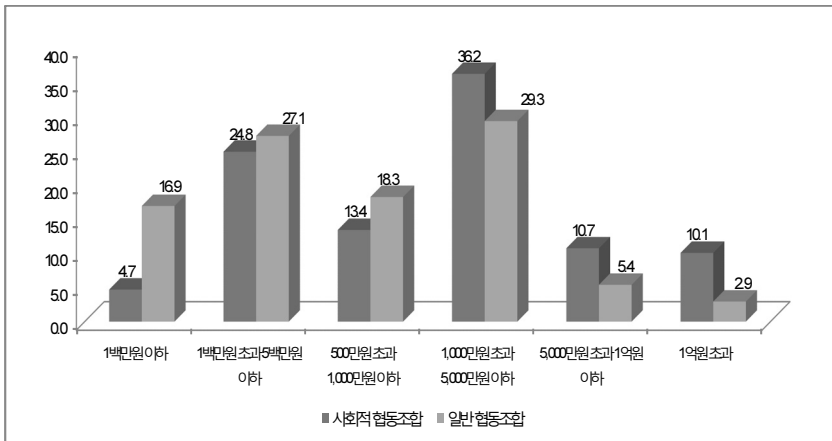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www.coop.go.kr

〈그림 1〉 일반 협동조합 월별 설립현황

7)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전체를 의미할 때는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을 의미할 때는 “일반 협동조합”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일반협동조합의 평균 기초출자금은 약 1,700만원이었으며 1,000만원~5,000만원의 출자금을 가진 조합이 1,364개(2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출자금 규모 100만원 이하인 협동조합이 788개(16.9%)였으며, 100~500만원인 협동조합이 1,263개(27.1%), 500만원~1,000만원인 협동조합은 849개(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자금이 5,000만원이 넘는 협동조합은 388개(8.3%)에 불과하였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3,400만원으로 일반협동조합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자금 규모가 1,000만원~5,000만원인 조합이 54(36.2%)개로 가장 많았으며 100~500만원인 협동조합이 37개(24.8%), 500만원~1,000만원인 협동조합이 20개(13.4%), 출자금이 5,000만원이 넘는 협동조합이 31개(20.8%), 100만원 이하인 협동조합이 7개(4.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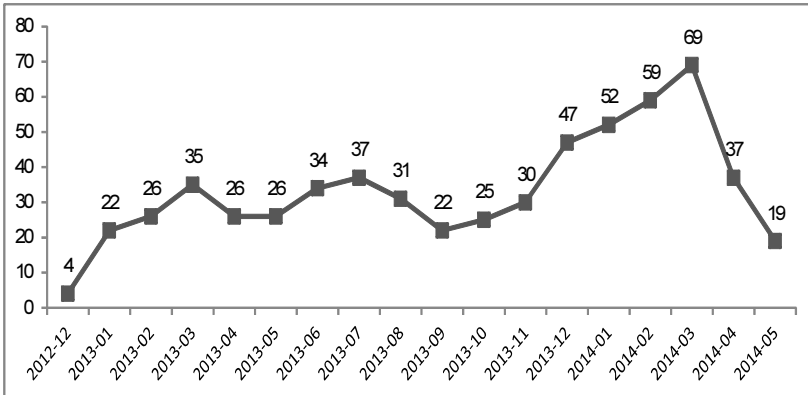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www.coop.go.kr

〈그림 2〉 협동조합 출자금 규모별 분포

2.2. 농업부문 협동조합 설립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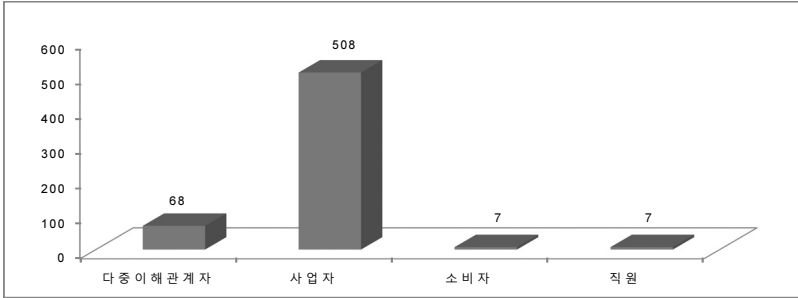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설립된 농업부문 협동조합은 총 601개였으며, 이 가운데 590개(98.2%)가 일반 협동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월평균 33.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설립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3월 이후에는 급감하였다.



자료: 기획재정부, www.coop.go.kr

〈그림 3〉 농업부문 협동조합 월별 설립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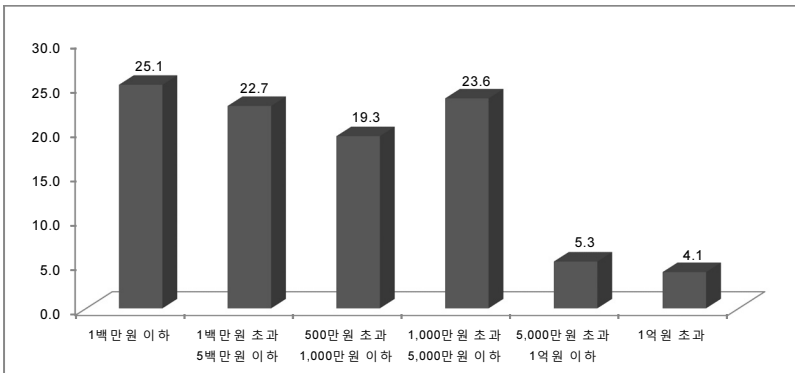
농업부문 협동조합의 86.1%는 사업자 협동조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11.5%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기획재정부, www.coop.go.kr

〈그림 4〉 농업부문 협동조합 유형 현황

농업부문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1,90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00만원이 많으나 100만원 이하 구성비는 25.0%로 전체 평균 16.9% 보다 많았다.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출자금이 100만원 이하인 농업부문 협동조합은 150개(25.0%)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협동조합이 142개(23.6%)였다. 다음으로 100만원 초과,



자료: 기획재정부, www.coop.go.kr

〈그림 5〉 농업부문 협동조합 출자금 규모별 분포

500만원 이하의 출자금을 가진 협동조합은 135개(22.5%)이며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협동조합은 116개(19.3%)였다. 마지막으로 출자금이 5,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58개(9.7%), 1억원 초과는 24개(4.1%)였다.

3. 농업·농촌관련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요

3.1. 조사방법

본 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4년 5월 31일 기준으로 설립 및 인가된 협동조합 4,822개 가운데 업종분류를 농·임·어업으로 신고한 협동조합 601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타 업종으로 신고된 협동조합의 품목을 전수 조사하여 농업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협동조합 459개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였다. 이 중 우편발송이 가능한 협동조합 909개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105개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또한 우편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협동조합 가운데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 유선전화를 공개한 협동조합과 홈페이지, 쇼핑몰, 블로그 등 인터넷에 유선전화를 공개한 협동조합에 전화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0개 협동조합에 대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세부내용은 조사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운영 부문, 사업운영 부문, 지역사회와 관계부문, 관련정책 활용 및 요구사항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조합의 설립 및 조직운영 부문의 내용에는 협동조합 기본정보와 조합원 및 임직원 수, 영리여부 및 구성에 따른 분류, 설립목적 및 전환여부, 출자금 규모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조합의 사업분야, 사업진행 여부 및 사업중단 사유, 영업방식, 매

출액 규모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관계 부문에서는 협동조합 구성원의 지역사회 거주자 비율과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대상 및 판매지역, 원료수급처, 협동조합의 상호 네트워크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정책 활용 및 요구사항 부문은 설립과정에서 받은 지원정책, 현재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정부지원정책, 향후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3.2. 조사개요

조사에 응답한 신생 협동조합은 195개 협동조합이며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자 협동조합이 105개(53.8%)로 가장 많았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49개(25.1%), 사회적 협동조합이 24개(12.3%)였다. 또한 직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은 각각 9개(4.6%), 8개(4.1%)였다.

〈표 1〉 조사응답 협동조합 유형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	사회적	합계
빈도	105	8	9	49	24	195
구성비	53.8	4.1	4.6	25.1	12.3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다음으로 조합원 규모별 현황에 따르면 6~10명인 협동조합이 56개(28.7%), 11~30명인 협동조합이 50개(25.6%)로 나타났다. 이 밖에 5명인 협동조합이 42개(21.5%)였으며 50명 이상 협동조합 34개(17.4%), 30~50명 협동조합 13개(6.7%)로 구성되었다.

〈표 2〉 조사응답 협동조합 조합원 규모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5명	6~10명	11~30명	30~50명	50명 이상	합계	평균(명)
빈도	42	56	50	13	34	195	44.2
구성비	21.5	28.7	25.6	6.7	17.4	100.0	-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조사응답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3,686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출자금의 평균값이 포함되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는 협동조합이 61개(33.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42개(22.8%),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30개(16.3%), 100만원 이하 20개(10.9%)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이상 출자금을 가진 조합은 각각 16개(8.7%), 15개(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응답 협동조합 출자금 규모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이상	합계	평균
빈도	20	42	30	61	16	15	184	3,686만원
구성비	10.9	22.8	16.3	33.2	8.7	8.2	100.0	-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응답 협동조합의 이사장 평균나이는 52.7세로 나타났다. 50대 이사장의 협동조합이 73개(37.8%)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60대 이상 이

사장의 협동조합은 54개(28.0%)였다. 다음으로 40대 이사장의 협동조합이 45개(23.3%), 30대 이하 이사장의 협동조합이 21개(1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조사응답 협동조합 이사장 연령대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평균(세)
빈도	21	45	73	54	193	52.7
구성비	10.9	23.3	37.8	28.0	100.0	-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조사응답 협동조합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 협동조합과 전북지역 협동조합이 각각 37개(19.0%), 32개(16.4%)개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협동조합은 20개(10.3%)이었으며 세종·충남지역 협동조합은 18개가 조사에 응하였다. 기타 지역은 7% 내외의 구성비를 가졌다.

〈표 5〉 조사응답 협동조합 지역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북	세종· 충남	경기	강원	경남	전북	합계
빈도	20	13	8	14	15	13	18	37	14	11	32	195
구성비율	10.3	6.7	4.1	7.2	7.7	6.7	9.2	19.0	7.2	5.6	16.4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4.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8)

4.1. 설립 및 조직운영

4.1.1. 조합신설여부

전체 협동조합 중 새롭게 신설된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전환된 협동조합의 비중을 살펴보면 신설 협동조합이 89.7%, 전환 협동조합이 10.3%로 신설 협동조합의 비중이 매우 높다. 협동조합 유형별 신설 협동조합 비중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95.9%로 가장 많고, 사업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각 90.5%와 87.5% 이다. 따라서 앞의 세 유형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은 기존 조직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새로 신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은 전환 협동조합의 비율이 각각 22.2%

〈표 6〉 유형별 신설 및 전환 협동조합

(단위: 개, %)

구분	신설 협동조합		전환 협동조합		합계
	응답빈도	비율	응답빈도	비율	
사업자	95	90.5	10	9.5	100.0
소비자	5	62.5	3	37.5	100.0
직원	7	77.8	2	22.2	100.0
다중이해	47	95.9	2	4.1	100.0
사회적	21	87.5	3	12.5	100.0
전체	175	89.7	20	10.3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 8) 협동조합 유형은 설립목적·조합원 구성·잉여금의 이용방식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나 본 논문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과 표준정관례에 따라 사업자·소비자·직원·이해관계자·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한다.

와 3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조사대상이 10개 이하에 불과하므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4.1.2.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통하여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업조직이다. 협동조합 설립목적에 대한 조합 대표자에게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소득증가가 5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공헌이 1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설립목적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사업자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소득증가가 78.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들은 기본적인 목표와 더불어 부수적인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지증진이 37.5%, 조합원의 소득증가가 25.0%, 지역사회 공헌이 25.0%, 직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증가가 44.4%, 일자리 창출이 22.4%,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증가가 40.8%, 지역사회공헌이 37.5%,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공헌이 37.5%, 조합원의 소득증가가 29.2%로

〈표 7〉 유형별 협동조합 설립목적

(단위: %)

구분	조합원 소득증가	조합원 복지증진	지역사회 공헌	신사업 개발	일자리 창출	기타	합계
사업자	78.1	1.0	7.6	8.6	3.8	1.0	100.0
소비자	25.0	37.5	25.0	0.0	12.5	0.0	100.0
직원	44.4	0.0	11.1	11.1	22.2	11.1	100.0
다중이해	40.8	8.2	24.5	4.1	14.3	8.2	100.0
사회적	29.2	12.5	37.5	4.2	12.5	4.2	100.0
전체	59.0	5.6	16.4	6.7	8.7	3.6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포결과는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서 자익추구가 중심인지 공익추구를 중심으로 하는지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산자 협동조합 성격을 가지는 사업자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은 자익추구를,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추구가, 소비자와 다중이해 협동조합은 자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1.3. 조합원 규모

조합원 규모는 평균 44.2명으로 상당히 큰 규모에 이르지만 10명 이하의 협동조합이 전체의 50.5%에 이르고 최소 조합원 숫자인 5인 조합도 21.5%에 이르고 있다.⁹⁾ 또한 조합별로도 편차가 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6~10명이 2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1~30명인 조합이 25.6%이며 50명 이상인 조합은 17.4%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원 협동조합 7.4명, 사회적 협동조합 16.2명, 사업자는 27.6명, 소비자 협동조합이 82.8명,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93.9명이며 규모별 분포에서는 사업자, 직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30명이하가 각각 80.9%, 100.0%, 90.7% 비중을 차지하며 소비자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50명 이상

〈표 8〉 유형별 협동조합 조합원 규모 현황

(단위: %, 명)

구분	5명이하	6~10명	11~30명	30~50명	50명이상	합계	평균
사업자	23.8	26.7	30.5	6.7	12.4	100.0	27.6
소비자	25.0	12.5	12.5	0.0	50.0	100.0	82.8
직원	44.4	44.4	11.1	0.0	0.0	100.0	7.4
다중이해	12.2	26.5	18.4	12.2	30.6	100.0	93.9
사회적	20.8	41.7	29.2	0.0	8.3	100.0	16.2
전체	21.5	28.7	25.6	6.7	17.4	100.0	44.2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9) 중위값은 10.7명으로 조사되었다.

조합이 각각 50.0%와 30.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약하면 조합원 규모 10명 내외의 소규모 협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며 사업자, 직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소규모이고, 소비자,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규모는 앞의 세 유형보다는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된다.

4.1.4. 출자금 분포

협동조합 평균 출자금은 36,859천원, 조합원당 2,263천원으로 조사되었다.¹⁰⁾ 유형별 평균 출자금은 생산자 협동조합이 40,890천원, 조합원당 2,878천원, 소비자 협동조합 17,785천원, 조합원당 223천원, 직원 협동조합 33,766천원, 조합원당 4,459천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45,021천원, 조합원당 1,430천원, 사회적 협동조합 8,471천원, 조합원 75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조합별로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가장 많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장 적으며 조합원별로는 직원 협동조합이 가장 많고 소비자 협동조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금 분포는 사업자와 직원 협동조합은 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에서 각각 40.2%, 33.3%, 28.9%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500만원 이하가 76.2%로 가장 높다. 한편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 유형별 출자금 구성을 살펴보면, 자익성과 사업성이 강한 사업자 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은 전체 출자금과 조합원당 출자금의 규모가 크고, 사업성이 약하고 공익성이 강한 소비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 출자금과 조합원당 출자금의 규모가 비교적 작다.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전체 출자금은 가장 크지만 조합원당 출자금은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분포에 있어서도 사업자

10) 2013년 지역농협 평균 납입출자금은 6,735백만원이며, 조합원 평균 출자금은 3,095천원이다(농협중앙회(2014), 농·축협 경영계수 요람).

협동조합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9〉 출자금 분포

(단위: %, 백만원)

구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이상	합계	평균
사업자	5.9	18.6	16.7	40.2	9.8	8.8	100.0	41
소비자	14.3	42.9	0.0	28.6	14.3	0.0	100.0	15
직원	0.0	22.2	33.3	33.3	0.0	11.1	100.0	34
다중이해	15.6	17.8	17.8	28.9	8.9	11.1	100.0	45
사회적	28.6	47.6	9.5	9.5	4.8	0.0	100.0	8
전체	10.9	22.8	16.3	33.2	8.7	8.2	100.0	37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4.2. 사업운영

4.2.1. 협동조합의 사업분야

협동조합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농산물 유통이 63.1%로 가장 많고 작물생산 45.2%, 가공 44.1%, 체험관광 25.1%, 기타 11.8% 순서를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 유형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농산물 유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참여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의 구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협동조합 유형별로 유통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참여 분야를 살펴보면 사업자 협동조합은 작물생산¹¹⁾ 51.4%, 농산물 가공 42.9% 등 생산과 가공사업의 참여가 높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사업자 협동조합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지만 농산물 가공사업 참여가 57.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1) 작물재배와 가축 및 가금류 사육을 합한 것임.

반면에, 소비자가 중요 조합원인 소비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작물생산이 각각 25.0%, 29.2%, 가공부문 25.0%로 상대적으로 낮고, 소비자 협동조합은 기타가 50.0%, 사회적 협동조합은 체험관광이 33.3%, 기타가 31.6%이다. 직원 협동조합은 작물생산 44.4%, 가공 55.6%, 유통 55.6%, 체험관광 33.3%, 기타 25.0%로 모든 사업영역을 고르게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협동조합들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유통에 참여하고 있지만 조합원의 구성에 따라서 사업자 협동조합은 작물생산, 소비자 협동조합은 구매 및 도농교류 등의 기타사업, 직원과 다중이해관계 협동조합은 농산물 가공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은 체험관광과 기타사업에 참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 협동조합의 사업분야

(중복응답, 단위: %)

	작물재배	가축 및 가금류 사육	농산물 가공	농산물 유통	체험관광	기타
사업자	41.9	9.5	42.9	61.9	22.9	23.9
소비자	25.0	0.0	25.0	62.5	12.5	50.0
직원	44.4	0.0	55.6	55.6	33.3	25.0
다중이해	38.8	2.0	57.1	67.3	26.5	21.1
사회적	29.2	4.2	25.0	62.5	33.3	31.6
전체	39.0	6.2	44.1	63.1	25.1	11.8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4.2.2. 사업 진행여부

사업 진행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협동조합이 83.9%,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협동조합이 15.6%, 사업을 중단한 협동조합이 0.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동조합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이 정상

적으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유형은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85.4%이며, 다음으로 다중이해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83.3%이다. 소비자 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은 각각 75.0%와 77.8%로 다소 낮은 편이다. 다만, 이들 협동조합은 조사대상 사례가 각각 8개와 9개에 불과하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한편 사업을 중단한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 유형 24개 중 1개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유형별 협동조합의 사업 진행여부는 조사대상 협동조합을 고려하였을때 소비자와 직원협동조합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사업 진행여부

(단위: %)

구분	사업 미시작	사업 진행중	사업 중단	합계
사업자	14.6	85.4	0.0	100.0
소비자	25.0	75.0	0.0	100.0
직원	22.2	77.8	0.0	100.0
다중이해	16.7	83.3	0.0	100.0
사회적	12.5	83.3	4.2	100.0
전체	15.6	83.9	0.5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4.2.3.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이유

협동조합 설립 이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단한 이유로는 기타사유 53.1%, 사업운영 자금부족 25.0%, 수익창출 모델부재 12.5%, 정부지원 부재 6.2%, 사업운영 인력부재 3.1% 순이다. 기타사유 발생 비중이 높은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모델 정립,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유행처럼 무작정 일단 설립부터 해놓고

보자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타사유를 제외하면 사업자와 직원 협동조합은 자금부족이 각각 37.5%와 33.3%, 소비자 협동조합은 인력부족이 50.0%,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에서는 수익창출 모델 부재 37.5%, 자금부족 12.5%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타사유가 100.0%이다. 요약하면 사업자와 직원협동조합은 자금부족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수익모델부재,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금 및 시설, 지원기관의 협력체제 미흡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이유

(단위: %)

구분	사업운영 자금부족	수익창출 모델부재	사업운영 인력부족	조합원 수 부족	정부지원 부재	기타	합계
사업자	37.5	6.3	0.0	0.0	12.5	43.8	100.0
소비자	0.0	0.0	50.0	0.0	0.0	50.0	100.0
직원	33.3	0.0	0.0	0.0	0.0	66.7	100.0
다중이해	12.5	37.5	0.0	0.0	0.0	50.0	100.0
사회적	0.0	0.0	0.0	0.0	0.0	100.0	100.0
전체	25.0	12.5	3.1	0.0	6.2	53.1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4.2.4. 협동조합의 영업방식

협동조합의 영업방식은 인적 네트워크가 47.9%로 가장 비중이 높고, 온라인 판매 36.8%, 고정점포 33.2%, 오프라인 직접계약 30.2%, 전시 및 행사 28.6% 순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 유형별로 보면 영업방식에 차이가 있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인적네트워크 판매가 평균보다 낮은 반면에 온라인 판매를 45.1% 활용하고 있고 직접계약에 의한 판매도 36.3%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관계자 협

동조합에서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비가 각각 75.1%, 55.6%, 56.3%로 가장 높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가장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적네트워크의 구성비가 39.1%로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 보다는 낮은 반면에 고정점포 43.5%, 자체영업사원 17.4%, 직접계약 25.0%, 벤더계약 13.0% 등 안정적이고 공식적인 대면판매 뿐만 아니라 전시 및 행사 33.3%, 온라인 판매 26.1%로 비대면 및 무점포 방식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표 13〉 협동조합의 영업방식에 대한 응답

(복수응답, 단위: %)

구분	고정점포	전시 및 행사	인적 네트워크	자체 영업사원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직접계약	벤더 계약	기타
사업자	26.5	30.4	43.1	3.9	45.1	36.3	3.9	12.4
소비자	12.5	25.0	75.0	12.5	25.0	0.0	0.0	12.5
직원	33.3	11.1	55.6	0.0	22.2	22.2	11.1	11.1
다중이해	45.8	26.5	56.3	6.3	29.2	26.5	8.3	6.1
사회적	43.5	33.3	39.1	17.4	26.1	25.0	13.0	4.2
전체	33.2	28.6	47.9	6.3	36.8	30.2	6.3	9.7

자료 : 자체 설문조사, 2014.

4.2.5. 2013년 매출액

조사 협동조합의 평균매출액은 526,794천원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조합별로 차이가 매우 크다. 유형별 평균 매출액은 사업자 협동조합이 471,548천원, 소비자 협동조합 201,000천원, 직원 협동조합 218,666천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891,877천원, 사회적 협동조합 308,564천원으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가장 많고 소비자 협동조합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¹²⁾ 유형별 분포에서는 사업자 및 다

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5천만원 이하의 구성비가 각각 22.1%, 20.1%로 가장 높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의 구성비가 21.7%로 가장 높다.

〈표 14〉 2013년 매출액 현황

(단위: %)

구분	매출액 없음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3억원이하	3억원초과 5억원이하	5억원초과	합계
사업자	48.8	22.1	10.5	9.3	3.5	5.8	100.0
소비자	66.7	16.7	0.0	0.0	16.7	0.0	100.0
직원	57.1	14.3	0.0	14.3	14.3	0.0	100.0
다중이해	60.0	20.0	5.0	2.5	5.0	7.5	100.0
사회적	65.2	4.3	13.0	8.7	4.3	4.3	100.0
전체	54.9	18.5	8.6	7.4	4.9	5.6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4.3. 지역사회와의 관계

4.3.1. 조합원의 지역사회 거주

조합원이 협동조합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조합원의 75%이상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76.5%로 지역사회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합원들의 지역사회 거주비율이 75% 이상인 협동조합은 직원 협동조합이 100.0%로 가장 높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60.0%로 가장 낮다. 사

12)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에는 사업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지 않아 54.9%가 매출실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013년 매출실적이 있더라도 대부분 2013년도에 설립되었기에 1년 실적이라고 할 수 없다. 본 조사에서 매출액을 응답한 협동조합은 72개이며 응답한 협동조합의 중위값은 78,66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업자 협동조합과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각각 77.6%와 72.4%이다. 소비자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에서는 지역주민의 구성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농업부문에서 사업자 협동조합은 주로 지역 농업인이 조합원이 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다양한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다중이해관계자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조합원 구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5〉 협동조합 구성원의 지역사회 거주 비율

(단위: %)

구분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합계
사업자	12.1	0.0	10.3	77.6	100.0
소비자	0.0	0.0	20.0	80.0	100.0
직원	0.0	0.0	0.0	100.0	100.0
다중이해	10.3	6.9	10.3	72.4	100.0
사회적	0.0	0.0	40.0	60.0	100.0
전체	9.8	2.0	11.8	76.5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4.3.2. 협동조합의 원료수급 지역

협동조합의 원료수급 지역은 협동조합의 지역적 연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협동조합들의 원료수급은 조합원으로 부터 39.2%, 시·군지역에서 22.5%, 그리고 시도지역에서 13.7%,%를 조달하고 있어 높은 지역적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원료수급의 구성비가 조합원으로 부터가 49.1%로 나타나 지역내 조합원이 생산한 생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생산자 협동조합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소비자,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역시 높은 지역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직원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시·도지역을 벗어난 전국과 기타에서 조달한 구성비가 40.0%로 지역적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제공이 주요 설립목적이므로 조합원을 통한 생산원료 구매는 없지만 시군지역에서의 재화 구매 비율이 60.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6〉 협동조합의 원료수급 지역

(단위: %)

구분	조합원	조합이 위치한 시·군지역	조합이 위치한 시·도지역	전국	기타	합계
사업자	49.1	15.8	10.5	22.8	1.8	100.0
소비자	40.0	20.0	20.0	20.0	0.0	100.0
직원	40.0	20.0	0.0	40.0	0.0	100.0
다중이해	26.7	30.0	23.3	20.0	0.0	100.0
사회적	0.0	60.0	0.0	20.0	20.0	100.0
전체	39.2	22.5	13.7	22.5	2.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4.3.3. 협동조합의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 판매지역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지역은 협동조합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전국지역이 60.0%이고, 구·군지역은 17.0%이지만 협동조합 유형별로 보면 상이하게 나타난다. 사업자, 직원 및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전국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성비가 각각 66.1%, 60.0%, 55.2%이며 소비자 협동조합은 해당 조합 소재지 구·군지역이 40.0%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외지역이 20.0%를 차지하고 있다. 요약하면 협동조합의 성격에 따라서

생산자 성격이 강하면 전국적인 판매성향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하면 지역적인 판매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협동조합의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 판매지역

(단위: %)

구분	해당 구·군 지역	해당 시·도 지역	전국지역	국외지역	기타	합계
사업자	12.5	16.1	66.1	0.0	5.4	100.0
소비자	40.0	20.0	20.0	0.0	20.0	100.0
직원	20.0	20.0	60.0	0.0	0.0	100.0
다중이해	20.7	20.7	55.2	3.4	0.0	100.0
사회적	20.0	0.0	60.0	20.0	0.0	100.0
전체	17.0	17.0	60.0	2.0	4.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4.3.4. 협동조합의 상호 네트워크 형성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는 동종 협동조합, 이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같은 협동조합 지원기관들과의 연계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조사에서 네트워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8%이다. 따라서 59.2%의 협동조합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트워크는 주로 신설 협동조합들과 기존에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트워크 형성이 가장 활발한 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며 70.0%가 네트워크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53.4%로 가장 낮은 네트워크 활동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종류면에서는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 특징을 보면 사업자 협동조합은 지역외부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중점적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지역내부 네트워크 활용비율이 높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외부와의 네트워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8〉 협동조합의 상호 네트워크

(단위: %)

구분	관계 없음	지역 내 신설 조합간 네트워크	지역 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전국규모 네트워크	지역 내 농협	기타	합계
사업자	46.6	13.8	22.4	6.9	8.6	1.7	100.0
소비자	40.0	0.0	40.0	0.0	0.0	20.0	100.0
직원	40.0	20.0	20.0	0.0	20.0	0.0	100.0
다중이해	30.0	13.3	46.7	3.3	3.3	3.3	100.0
사회적	40.0	20.0	40.0	0.0	0.0	0.0	100.0
전체	40.8	13.6	31.1	4.9	6.8	2.9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4.4. 관련정책 활용 및 요구사항

4.4.1. 설립과정에서 받은 지원 현황

설립과정에서 지원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1%로 가장 높고 지원받은 정책으로는 컨설팅 28.2%, 교육 26.2%, 금융지원 15.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동조합 지원정책이 금융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설립 및 교육 등 간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직원협동조합이 77.8%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66.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지원을 받지 못한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이 50.0%,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44.9%, 사업자 협동조합이 43.8%이다. 도움항목별로

는 교육부문은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에서 20.0%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컨설팅은 사업자와 직원협동조합이 33.3%, 자문은 직원 협동조합 22.2%, 금융지원은 사업자 협동조합 20.0%, 사무실 및 영업장 등 시설지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12.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합 유형별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사업자 협동조합은 교육·컨설팅·금융지원을, 소비자 협동조합은 교육, 직원 협동조합은 교육·컨설팅·자문을,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교육·컨설팅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교육·컨설팅·자문·시설지원 비중이 높다.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소비자 협동조합을 제외하면 교육, 컨설팅, 자문 등 설립과정에서의 지원은 모든 유형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조합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 금융, 시설지원은 조합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개별조합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운영과정이 타 유형의 협동조합보다 복잡한 직원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문지원을 주로 이용하고 소상공인협업화자금 지원제도 등 금융지원은 사업자 협동조합이, 시설지원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용비율이 높다.

〈표 19〉 협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받은 지원 현황

(중복응답, 단위: %)

구분	교육	컨설팅	자문	금융지원	사무실 영업장	지원없음	기타
사업자	25.7	33.3	11.4	20.0	6.7	43.8	2.9
소비자	25.0	0.0	0.0	12.5	0.0	50.0	12.5
직원	22.2	33.3	22.2	11.1	0.0	22.2	11.1
다중이해	24.5	20.4	12.2	12.2	6.1	44.9	10.2
사회적	33.3	29.2	16.7	8.3	12.5	33.3	4.2
전체	26.2	28.2	12.3	15.9	6.7	42.1	5.6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4.4.2. 현재 활용중인 정부지원정책

현재 활용중인 정부지원 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45.6%로 나왔다. 이는 설립과정에서의 지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활용중인 정책들도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지원 20.9%, 자활 및 사회적 기업 지원 13.3%로 기존 사업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정책들이며 협동조합 유형별로도 차이가 크다. “활용중인 정부정책 없음”에 응답한 경우는 직원과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62.5%로 가장 높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29.2%로 가장 낮아 정부지원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인 것으로 생각된다. 협동조합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사업자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지원을 34.7%, 소비자·직원·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기타를 각각 25.0%, 22.2%, 16.3%로 답변하였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활 및 사회적 기업 지원항목을 33.3%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중인 정부정책은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교육

〈표 20〉 협동조합이 현재 활용중인 정부지원정책

(중복응답, 단위: %)

구분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	사회적	전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지원	34.7	0.0	12.5	4.4	4.2	20.9
정부조달시장의 납품	2.0	0.0	0.0	4.3	4.2	2.7
중소기업 지원정책	10.2	0.0	0.0	8.9	16.7	9.9
기부금 단체로서의 인정	2.0	0.0	0.0	0.0	8.3	2.2
자활 및 사회적 기업 지원	9.3	14.3	0.0	13.3	33.3	13.3
세금감액 등 세제지원	1.0	14.3	0.0	2.2	4.2	2.2
판매지원 (박람회 등)	11.2	0.0	0.0	11.1	12.5	10.4
기타	12.4	25.0	22.2	16.3	12.5	14.3
활용중인 정부정책 없음	40.8	42.9	62.5	62.2	29.2	45.6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및 홍보 등의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사업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자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소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 기업 제도 등 기존정부지원 사업에 의한 정부지원 정책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4.3. 향후 필요한 정부지원정책

향후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상품판로 및 개발지원이 50.3%, 금융지원이 52.1%로 나타나 사업실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에서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지만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협동조합은 위 두 가지 사항 이외에 홍보지원이 각각 40.2%와 57.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직원 협동조합에서는 상품판매 등 마케팅이 66.7%로 전체 평균보다 16.7%가 높게 나타났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마케팅지원에 대한 요구가 낮은 반면에 금융지원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사업수립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29.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설립 과정에서의 지

〈표 21〉 향후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정책

(중복응답, 단위: %)

구분	상품판로 개발지원	사업수립 컨설팅	금융지원	정보포탈 구축	교육지원	홍보지원	기타
사업자	55.4	15.7	48.0	16.7	21.6	40.2	15.2
소비자	57.1	0.0	57.1	14.3	28.6	57.1	12.5
직원	66.7	11.1	33.3	22.2	11.1	33.3	11.1
다중이해	38.8	16.3	63.3	18.4	18.4	29.2	16.3
사회적	43.5	29.2	52.2	26.1	26.1	17.4	16.7
전체	50.3	16.8	52.1	18.4	21.1	34.9	15.4

자료: 자체 설문조사, 2014.

원 정책보다는 설립된 이후 활동중인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개발 지원과 경영 안정화, 그리고 지역 내 협동조합 생태계 형성을 위한 협동조합 간 연계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신생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운영현황과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립방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신설 협동조합의 비율이 약 90% 내외로 높게 나타났으나 소비자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은 전환 협동조합의 비율이 각각 22.2%와 37.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조합의 운영 목적을 살펴보면 사업자와 직원 협동조합은 자익추구가 목적이었던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추구를, 소비자와 다중이해 협동조합은 자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규모는 10명 내외의 소규모 협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나, 소비자 협동조합은 규모가 다소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 유형별 출자금에서는 자익성과 사업성이 강한 사업자 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은 출자금이 많지만, 공익성이 강한 소비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교적 출자금 규모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운영 부문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유통을 겸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협동조합은 작물생산, 소비자 협동조합은 구매 및 도농교류 등의 기타사업을, 직원과 다중이해관계 협동조

합은 농산물 가공분야를, 사회적 협동조합은 체험관광과 기타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중단 이유로는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사업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은 자금부족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수익모델부재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관련기관과 협조관계 미흡 등 복합적 사유가 사업중단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의 영업방식을 종합하면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판매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사업자 협동조합은 온라인 판매망 활용비율과 개별적인 직접계약에 의한 판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소매업의 성격이 강한 소비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인적 네트워크와 고정점포를 통한 판매비율이 높았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장 다양한 형태의 영업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부문에서 조합원의 지역사회 거주비율을 살펴보면 사업자, 소비자, 직원 협동조합은 지역주민 구성비가 높고, 다양한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다중이해관계자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조합원의 구성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원료수급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협동조합 유형에서 해당 소재지 시·군 지역에서 주요 원료를 수급하나, 직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소재지 외부 시·군지역에서 원료를 수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협동조합의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 판매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생산자성격이 강하면 전국적인 판매성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하면 지역적인 판매성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관련정책 활용 및 요구사항 부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받은 지원 현황의 주요내용은 교육·컨설팅·자문 등이다. 설립과정에서의 지원은 소비자 협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조합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금융·시설지

원은 조합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활용중인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응답결과로 보았을때 기존에 사업적 기반이 있는 사업자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소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 기업제도 등의 기존 정부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현 지원정책이 교육, 홍보 등의 간접지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향후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상품판로확보 및 연구개발지원 그리고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협동조합들은 사업실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설립목적에 따른 유형별 육성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산자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30명 규모의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가장 밀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조합 유형별로 규모 및 사업운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유형별로 조직 및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협동조합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도 조정하여야 한다. 즉, 설립지원과정에 대한 정책보다는 이미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개발 및 경영 안정화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지역내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협동조합일수록 생존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농협을 포함한 협동조합간의 연계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신생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내 협동조합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이다.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협동조

합에 대한 전국규모의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점이다. 선행연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준 또는 전국수준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구가 있으나 이는 모든 업종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으며, 농업분야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두 번째 의의는, 본 연구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될 농업 및 농촌관련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펼쳐질 농업분야 협동조합 지원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사업운영방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농업분야 협동조합들이 현재 활용중인 정책 현황,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의견들은 정책 입안자에게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본 연구는 조사대상과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 번째로, 본 설문조사의 전체 조사대상 1,060개 조합중 응답률이 약 18.4%에 불과한데다가, 신설 협동조합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조직이 많아 운영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계량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차기 연구에서 해당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 김기태. (2012a). 농식품 생산·유통·가공영역의 새로운 협동조합 전망과 농협과의 관계. *농정연구*, 42, 15-34.
- 김기태. (2012b). 농업인생산자조직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과제, 제21차 *지역리더포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농업·농촌의 대응과제*. 지역재단, 37-62.
- 김두년.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30(2), 1-21.
- 김정섭, 이상진, & 김미복.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 김미복. (2013).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선, 김정호, 박문호, & 김창호. (2013).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범용. (2012). 협동조합간 지역연대 전략의 모색. *농정연구*, 42, 49-70.
- 설광언, & 김동석. (2012). 「협동조합기본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 오은주, & 김선기. (20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KRILA Focus*, 5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오은진, 김복태, & 감난주. (2012).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원종욱, 김태완, 김문길, 윤문구, 엄형식, 윤시문, 임완섭, & 정은영. (2012).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선, 권소일, 남상호, 김미숙, 오영호, 윤강재, 김현식, & 이상림. (2012).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선, 노대명, 김태완, & 권소일. (2013). 201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승주, 이태형, & 신민성. (2013). 화물운송협동조합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조우석. (2013). 2013 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실태조사 보고서. 희망제작소.

- 채중헌. (2013). *지역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최양부. (2012). 협동조합기본법시대의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방향과 농업·농촌의 실천 과제. 제21차 지역리더포럼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농업·농촌의 대응과제. 지역재단, 3-35.
- 한창용. (2014). *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 허은영. (2012).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go.kr.

Received 27 September 2014; Revised 08 October 2014; Accepted 11 November 2014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Established Cooperatives in Agricultural Sector

Kyung Sik Choi^a · Gi Pou Nam^a · Dae Yong Hwang^b

^aAgricultural Cooperative University, 281, Sesamruung-gil, Dukyang-gu, Goyang-si, Gyeonggi-do, 412-707, Korea

^bReporter, Farm Management Division, Technology Cooperation Bureau,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300, Nongsaengmyeong-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60-500,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in promoting new cooperatives established in agriculture based on the 2012 Cooperative Act.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195 newly established cooperatives as the policy target of this study.

The new cooperatives were classified as three kinds namely as 'Business' Cooperatives', 'Consumers' Cooperatives', 'Social Cooperatives' based on their member attributes and objectives. Interesting to note that, all of these new cooperatives born by the new Act has taken the marketing business as their main stream business.

Among the three types, 'Business Cooperatives' are ranked the highest amount of capital shares per person in average, having about 30 members in size. In categorization, 'Business Cooperatives' include farmer cooperatives as majority and employee cooperatives. They are usually involved in both production and marketing and even in processing activities, and have tried to secure their business performance by e-commerce and stable business contracts. Their

diverse activities are highly associated with their local community.

Consumers' Cooperatives include consumer cooperatives and stakeholder cooperatives in achieving welfare of members. This type has lower share in capital but has over 30 members in a cooperative, taking marketing (distribution) business as main and often take advantage of their social network and physical store. Regional relationships are less than producer cooperatives.

'Social Cooperatives' are established by public interest and have around 10 members and lowest per capital. their business and community activity is similar to the consumer cooperatives.

This study recommends the needs of designing suitable business models by these three types of cooperatives in the future, while appropriating their membership size for their tangible business operations. The government policy direction should aim to develop their new business opportunities and its management stabilization, especially in conjunction with the exist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Nonghyup). It must be rather than to provide simply policy supports for establishment. An in-depth study is recommended in this regard.

key words : Agricultural Sector Cooperative, Organ's operation, Managing business



Kyung-Sik Choi is a professor of Agricultural Cooperative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rural economy.

Address: Agricultural Cooperative University, 281, Sesamreung-Gil,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412-707, South Korea.

e-mail) kschoi@nonghyup.ac.kr, phone) 82-31-960-4101



Gi-Pou Nam is a professor of Agricultural Cooperative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cooperative networks in rural area and rural economy

Address: Agricultural Cooperative University, 281, Sesamreung-Gil,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412-707, South Korea.

e-mail) nkp17178@chollian.net, phone) 82-31-960-4311



Dae-Yong Hwang is a researcher of Farm & Agribusiness Management Divis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farm diversification, agricultural economics.

Addres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300, Nongsaengmyeong-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60-500, South Korea.

e-mail) hdy@korea.kr, phone) 82-38-238-1192